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배포일시	2018. 8. 23(목) / 총 2매
담당 부서	건축정책과	담당자 ·과장 남영우, 사무관 김부병, 주무관 이창욱 ·☎ (044) 201-3755, 3765, 4835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"23명..40명..9명..세일전자 화재 참사 또 '샌드위치 패널' 보도 관련

-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
  - 안성 냉장창고 화재(13.5.3)와 광주 제조공장 화재(13.5.6) 이후 정부는 「복합자재 건축물 화재 저감대책(13.6)」을 통해 난연성능 확보 대상을 확대\*하고 복합자재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.
    - \* 난연재료 사용대상 확대('14.8.27 건축법 시행령 개정)
      - 공장 : 도축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
      - 창고 : 적용대상을 3,000㎡→600㎡로 강화
  - 또한, 다중이 이용하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\* 등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강화('15.9)한 바 있습니다.
    - \*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학원, 노유자시설, 숙박시설 등
- 정부는 지난 8.21일 발생한 세일전자 공장 화재 사고의 피해확대 원인 등이 규명되면 관계전문가, 업계 등과 함께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한편,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강화된 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화된 건축법령에 따라 당해 건축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
  - 창고면적이 증가하거나 공장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 등을 갖춘 복합패널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

□ 우리부는 본 화재 건축물이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위법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위법 관련 건축관계자 등에게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8.22 한겨레) >

“23명...40명...9명..세일전자 화재 참사 또 ‘샌드위치 패널’”

- 대형 화재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샌드위치패널 알고도 방치한 정부, 2015년 뒤늦게 건축규제 강화
- 600㎡ 미만 창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창고면적을 쪼개어 샌드위치패널 사용허가를 받거나, 창고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공장하는 사용하는 편법이 등장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부병 사무관(☎ 044-201-37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